

# 公共圖書館의 職制確立과 豫算 및 司書職의 教育, 養成, 待遇問題

張 仁 植 (仁川市立圖書館長)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여러 先輩님과 同職者 여러분 앞에서 「公共圖書館의 職制確立과 豫算 및 司書職의 教育, 養成, 待遇問題」라는 엄청난 議題를 發表하게 된 것을 悚懼스럽게 여기오며 한편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問題는 크고 어려우며 研究는 未及하고 時間은 不過 50分인데 果然 여러분에게 滿足할만한 發表가 될는지 두렵습니다.

특히 이번 大會의 趣旨가 圖書館法の 制定公布를 앞둔 一步前에 있어서의 圖書館 諸分野의 當面問題에 대한 研究 討議에 있고, 또한 大會 各議題의 範圍가 圖書館 法制定以後 閣下으로서 다루게 될 施設, 豫算, 職員等의 規定이 各種圖書館에 直接의인 影響을 주는만큼 이러한 諸事項이 現實의으로 如何히 規定 展開되어야 할 것인가를 具體的으로 研究 討議하는데 있는 만치 따라서 그런 趣旨와 範圍에 立脚하여 平素 痛切하게 느껴온 것을 土臺로 이 命題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어진 命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職制確立問題와 司書職의 教育, 養成, 待遇問題 같은 것은 서로 聯關性을 띠고 있으므로 便宜上 이를 먼저 順次的으로 論述하고 豫算問題는 뒤로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職制의 確立問題로 들어가겠습니다.

입니다.

## 1. 職制確立問題

職制의 確立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선 現行法規上에 나타나 있는 도서관의 職制에 관한 規定과 實行되고 있는 制度의 實例等을 引用考察하면서 比較檢討하거나 論評해 보겠습니다.

### (1) 國立圖書館職制

1949年5月6日 大統領令 第97號로 公布된 以後 두차례의 改正을 거친 國立圖書館 職制에서 問題點만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2條 圖書館에 館長을 두되 館長은 理事官으로써 補한다.

第3條 圖書館에 館長以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둔다.

書記官	1人
司書官(3級甲類)	3人
事務官	1人
主事	1人
司書	5人
書記	3人
技員	2人

前項의 公務員以外에 必要에 따라 囑託을 들수 있다.

第4條 圖書館에 總務課, 司書課 및 閱

覽課를 둔다.

總務課長은 書記官으로써 補하고 其他의 課長은 司書官으로써 補한다.

※國立博物館職制

第3條 國立博物館(分館包含)에 館長以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둔다.

學藝官 8人(3級甲類2人 乙類6人)

事務官 1人

主事 4人

書記 2人

第4條 國立博物館에 前條에 規定한 公務員以外에 囑託을 둘수 있다.

第5條 國立博物館에 館長을 둔다.

館長은 1級公務員으로써 補한다.

第6條 國立博物館에 總務課, 陳列課, 研究課 및 普及課를 둔다.

各課長은 學藝官 또는 事務官中에서 補한다.

以上 例擧에서 兩館의 職制를 比較하여 보면 國立圖書館은 館長이 2級公務員, 定員은 17人, 課는 3課임에 反하여 國立博物館은 館長이 1級公務員이고 定員이 16人, 課가 4課로 되어 있는데 前者는 後者보다 館長地位에 있어서 同等이 낮으며 定員은 1人이 더한 것뿐이고 課數도 오히려 1課가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機能의 幅이나 事業範圍의 크기나 奉仕領域의 넓이로 보아서도 前者가 後者보다 낮거나 못해야 된다는 理由를 도저히 發見할 수 없습니다. 前者가 越等한 位置에 놓여지지는 못할 망정 後者보다 劣等한 地位에 處해 있다는 것은 甚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兩者는 모두 一國을 代表할만한 文化機關으로서 제각기 特有의 機能, 性格, 價値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구태여 여기에서 그 伯仲과 優

劣의 等差를 論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兩者는 對等한 位置에는 놓여져야 할 것입니다.

美·日兩國等の 國立國會圖書館과 같이 格位 높은 制度나 機能과 比較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國立圖書館은 너무나 差異가 甚한 부대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로 速히 우리나라의 國立圖書館制度도 外國의 國立圖書館制度和 같이 是正 向上되어야 할 줄 압니다.

(2) 法令上의 司書職層

① 教育公務員任用令

1962年2月27日 閣令第491號로 改正當時의 教育公務員任用令에 依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第6條의2 事務職員의 職系別, 職種別, 職群別, 職列別, 級別, 類別職層은 別表와 같다.

別表 職層表(拔萃)

事務系(職系)

1部~一般行政(職部)

學藝(職群)

司書職(職列)

司書官(3級甲類)

司書官補(3級乙類)

司書(4級甲類)

司書補(4級乙類)~(職級)

以上에서 보면 司書職은 4個의 職級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事務系로서 一般行政職部の 學藝職群속에 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舊公務員任用令

1962年5月9日 閣令第738號로 改正(1961年4月15日 公布後 第10次改正) 當時의 舊公務員任用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第33條 (職種表) 公務員의 職系列, 職部別, 職群別, 職列別, 級別, 類別, 職種은 別表 第1號와 같다.

別表第1號 職種表(拔萃)

事務系(職系)

1部~一般行政(職部)

學藝(職群)

◎學藝職(職列)…(博物館系統~筆者註)

學藝官(2級乙類)

副學藝官(3級甲類)

學藝官補(3級乙類)

學藝士(4級甲類)

學藝士補(4級乙類)~(職級)

◎司書職(職列)…(圖書館系統~筆者註)

司書官(3級甲類)

司書官補(3級乙類)

司書(4級甲類)

司書補(4級乙類)

여기에서 볼때 博物館系統의 學藝職列이나 圖書館의 司書職列이 모두 學藝職群속에 들어 있으며, 學藝職列은 2級乙類까지 昇進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는 反面에 司書職列은 3級甲類까지를 限度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公共學校에 配置하는 事務職員에 關한 件

1962年1月22日에 閣令第389號로 公布된 公立學校에 配置하는 事務職員에 關한 件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第1條 (大學) ① 公立大學(初級大學 包含)에 다음의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行政事務官

財經事務官

行政主事

財經主事

司書

農林技士

畜産技士

獸醫士

行政主事補

財經主事補

司書補

4級公務員으로서의 司書나 司書補만을 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國立學校設置令

1962年2月17日 閣令第455號로 改正(1953年4月20日 公布後 5次改正)된 國立學校設置令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第4條 國立大學校에는 다음과 같이 研究施設을 둔다.

1. 各大學校에 附屬圖書館과 附屬博物館

第6條 國立大學校에 總長, 副總長과 그 附屬學校에 校長, 校監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둔다.

教授…教師

行政副理事官…司書官…司書官補…司書…司書補…

第13條의2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 庶務課, 司書課와 閱覽課를 둔다.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서 補하고 其他課長은 司書官 또는 司書官補로써 補한다.

第15條 國立大學에는 다음과 같이 研究施設을 둔다.

1. 各大學에 附屬圖書館

第17條 國立大學에 學長과 그 附屬學校의 校長, 校監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둔다.

教授…教師

行政事務官…(司書職種이 全然 나타나

있지 않고 있음)

#### ⑤ 新公務員任用令

從來의 公務員任用令, 公務員考試令, 公務員昇進規程, 事務職教育公務員任用證衡令等の 諸法令이 一括하여 廢止되고 1963年 5月29日에 閣令 第1317號로서 公務員任用令이 새로 制定公布되었습니다.

이 令에서 다루어진 司書職種을 拔萃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3條 (職位의 級類 및 等級區分) ① 1級乃至 5級公務員이 擔當하는 職位의 級類區分 및 職級은 別表1과 같다.

1級乃至 5級職級表 (別表1)

#### 4. 學藝(職群)

(職列)

學藝... 學 藝 官, (2級乙類)	副學藝官 (3級甲類)
學藝官補, (3級乙類)	學 藝 士 (4級甲類)
學藝士補 (4級乙類)	

演藝...

國樂...

#### 5. 行政(職群)

(職列)

司書... 司 書 官, (3級甲類)	司書官補 (3級乙類)
司 書, (4級甲類)	司 書 補 (4級乙類)
司書書記, (5級甲類)	司書書記補 (5級乙類)

以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司書職種이 舊任用令에서는 學藝職群속에 包括되어 있던 것이 新任用令에서는 行政職群속에 包含되고 있음을 確然히 알수 있습니다. 博物館系의 職種은 從來보다 오히려 權威있게 獨立된 職群을 形成하고 있음에 反하여 司書職種은 그와 正反對로 廣範한 概念의 行政職群속에 隸屬된 下位概念인 司

書職列로서 取扱되고 있음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 (3) 公共圖書館의 職制

##### ①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

1957年 4月25日 서울特別市條例128號로 公布된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의 關係條目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4條 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館長은 司書官으로써 補한다.

館長은 教育監의 命을 받아 館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館長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둔다.

##### ② 市(區)立圖書館職制條例準則

이 準則은 1952年 7月9日 文普第 號로 制定되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2條 市(區)立圖書館에 左의 公務員을 둔다.

司書官 人(特別市立圖書館에 限함)

司 書 人

書 記 人

第3條 市(區)立圖書館에 前條에 規定한 公務員以外에 囑託 또는 傭人을 들 수 있다.

第4條 市(區)立圖書館의 職員과 市教育委(區)의 職員은 서로 兼任케 할 수 있다.

第5條 市(區)立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館長은 司書官 또는 司書로써 補하며...

第6條 市(區)立圖書館에 必要한 係를 둔다.

##### ③ 地方公務員令

1951年 2月10日 大統領令 第276號로 公布된 以來 1962年 3月16日 閣令 第535號로 改正(第7次)된 地方公務員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26條 公務員은 道知事, 서울特別市長, 市邑面長, 副市邑面長 및 區廳長以外에 1級, 2級, 3級 및 4級公務員으로 區別하고 이를 다시 職種別(別表 第1表)로 區別한다.

◎地方公務員職種別一覽表(別表1)

事務系

職部別~一部(一般行政)

一般行政職

地方行政理事—地方行政參事—地方行政主事—地方行政主事補—地方行政書記—地方行政書記補

④ 仁川市立圖書館職制

1959年 7月28日 仁川市規則 第86號로 制定된 仁川市立圖書館의 職制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2條 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館長은 地方(行政)參事 또는 地方(行政)主事로써 補한다.

第3條 圖書館에 館長以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둔다.

地方主事(行政)

地方書記(行政)

地方技員(機械)

※第2, 第3條中 ( )表示事項은 筆者 註임.

위에서 볼때 仁川市立圖書館의 職制編成은 두말할 나위없이 ③ 地方公務員令에 依한 一般地方行政職種이 適用되고 있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4) 綜合檢討

現代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이 高度의 一般教養을 바탕으로 하고 그위에 圖書館奉仕에 必要한 專門의인 理論과 技術과 德性을 쌓은, 이른바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이어야 함은 여기에서는 더 말

할 必要가 없겠습니다.

現在 法令上으로 나타나 있는 司書라는 職種은 敎職者와 같이 別定職化되어 法的으로 保障된 即 法的資格을 띤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任命되면 受任할수 있는 一般行政系에 屬한 事務職으로서의 司書職種일 뿐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圖書館의 業務를 專門性을 가지고 學問과 文化를 다룬다는 特殊業務로 認定하지 않고 單純한 行政事務의 一種으로 取扱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圖書館이 民衆의 敎育, 學術, 情緒, 知識의 追求等の 諸般文化的 活動을 도우는 機關임에 비추어, 그리고 圖書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一般行政事務員으로 그릇取扱되고 있음에 비추어, 國公立圖書館司書職員의 專門職化를 비롯한 그의 法制度化問題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司書職으로서 必要한 圖書館學을 履修치 아니한 現職者의 敎育, 訓練을 통한 救濟策도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時在 두갈래로 나누어져 亂脈狀態를 이루고 있는 公共圖書館의 職制制度를 一元化시키는 問題입니다.

지금 一群의 公立圖書館職制는 國家公務員法에 依한 職種이 適用되고 있는가하면 一群의 公立圖書館職員은 地方公務員令에 依한 職種이 適用되고 있습니다.

司書職種이 內包되어 있지 않은 地方公務員令은 앞으로 地方公務員法으로 改正될 것이라는바 或是나 地方司書라는 職種이 包含될지도 알수 없는 일입니다. 司書職種이 別定職化되지 못한채 地方公務員法等에 萬若 規定된다면 危險千萬한 일입니다. 十分 警戒를 要할 일입니다.

그다음에는 二元化된 公立圖書館에 대한 指揮監督體系를 一元化시키는 問題 亦是 重要한 일입니다. 이를 指摘한다면 內務部一道內務局地方課一市郡總(內)務課 또는 公報室—公立圖書館 이런 式으로된 一群의 系統이 있으며, 文教部一道教育局文化課—市郡教育課—公立圖書館과 같은 體系를 세우고 있는 一群의 公立圖書館도 있습니다. 이처럼 矛盾相을 露呈하고 있습니다. 政府組織法上으로 보든지, 그밖에 어느면으로 보든지간에 後者の 것이 正統體系라고 믿어집니다.

다음엔 國公立圖書館職員과 國公立大學圖書館職員에 대한 職階制度를 單一化할 것이냐 아니면 分離하여 制定할 것이냐 하는 問題입니다. 人事交流面에서 보면 單一化하는 것이 便利하고, 專門的乃至 機能的인 면에서 생각하면 分離시키는 것이 可當하다고 봅니다. 現在에 國立圖書館과 國公立大學圖書館 그리고 一部の 公立圖書館의 職員은 同一職階制 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 ×

現在의 無定見한 公立圖書館職階制를 分明히 하고 專門職인 司書職과 非專門職으로서의 補助職이라 볼 수 있는 事務職과 技術職으로 區分하여야 할것입니다. 學校에 있어서 教務職과 事務職을 두는 制度와 같이 닮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司書職을 專門職化하여 法官, 教授等과 같이 社會의 尊敬을 받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先進國에 있어서 司書職이 社會의 尊敬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司書職에게는 社會教育者(社會教育公務員)라는 概念이 내러져야 할것입니

다. 社會教育은 바로 學校教育과 雙壁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司書職의 報酬制度는 敎職者를 別定職으로서 待接하는것 처럼 別定職報酬制度를 採擇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敎職者가 敎壇에서 一生을 마치는것 처럼 司書職은 圖書館에서 平生동안 安心하고 일하다가 죽을수 있도록 保障되어야 할 것 입니다.

定員制度의 確立과 臨時職制度의 止揚 問題 또한 重要한 일입니다. 現在 各公立圖書館에는 極히 적은 數의 定員이 配定되고 있으므로 館運營에 莫大한 障害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圖書館은 부득이 若干의 臨時職으로서 一時的인 彌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有能한 人材의 投身을 不可能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公務員중에서 가장 待遇가 좋지 못한 곳이 公共圖書館이라는 말까지 있는것도 여기에서 緣由함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圖書館行政을 中心으로한 文教部職制를 考察하여 參考에 資하려 합니다. 文教部の 圖書館에 대한 指揮監督行政體系의 一元化問題에 있어서는 앞에서 若干言及한 바 있습니다만, 이 問題는 새삼 復言할 餘地없이 이미 過去부터 法文上으로 明文化되고 있습니다. 勿論 微弱하기 짝이 없는 內容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圖書館施策이 樹立되지 못하고 立法化되지 못하였으며, 職制는 活用되지 못하고 強化되지 못한채 當務者들의 矇昧 속에 잠자왔던 것입니다.

稱微하나마 明文化된 條文을 摘記하면 文教部職制 第8條3項에 「社會教育課는…圖書館…分掌한다」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質的으로 重要하고 量的으로 巨大한 圖書館行政業務 하나만 가지고도 한사람이 다 뛰어나기 어려울터인데 社會教育課長은 몇명의 補佐官을 거느리고 있는지는 알수 없어도 成人教育과 國民思想의 研究指導, 靑少年의 指導 및 敎化, 儒林團體, 育英團體, 宗教團體, 圖書館, 博物館, 動物園, 植物園各種 講習所 其他局內 他課의 主管에 屬하지 아니한 事項等 勿論 12種의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圖書館行政業務만을 專擔하는 그리고 圖書館專門職을 補佐官으로서 갖지 못한채 非圖書館專門職인 社會教育課長에 依하여 圖書館行政을 비롯한 12種의 業務를 分掌케 하고 있는데는 啞然 失色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文教部職制 第2條에는 長官, 次官 以外的의 公務員을 두는 規定이 있는데 그중에 學藝官補, 學藝士, 學藝士補란 學藝職種은 있어도 司書職에 관한 職種은 볼수 없는것이 설설합니다. 博物館事業과 같은 行政을 위해서는 專門職으로서의 學藝職은 들수 있어도 圖書館行政을 위해서는 專門職인 司書職種하나 쯤이라도 들수 없다는 結論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文教部에는 圖書館行政을 위한 圖書館局 또는 圖書課 같은 機構와 職制가 確立設置되어야 할것입니다.不然이면 最少限度나마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行政官이 2, 3人쯤 配置됨이 當然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職制는 市道 또는 市郡機構속에도 編制되어야 할것입니다.

本項職制의 考察에 있어서는 좀더 敷衍할 點이 많습니 다만 時間關係上 이 程度에서 줄이겠습니다.

## 2. 司書職의 教育, 養成, 待遇問題

司書職의 養成 및 待遇問題의 考察에 있어서는 앞서 職制問題를 考察할 때에도 司書職의 資質, 處遇等의 連關되는바를 前提로 하면서 檢討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도록 重複을 避하고 要點만을 略述하려 합니다.

1963年 3月末 現在로 韓圖協에서 集計한 것을 土台로 今年 8月末 現在로 本圖書館에서 다시 集計한바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數는 44館이며 그 職員은 253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8週間課程以上의 司書職教育을 履修한 職員은 不過 7名이라는 寒心한 實情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에 學部課程으로서의 圖書館學科가 設置된것은 7年前의 일입니다. 1957년에 延世大에 學部課程과 同時에 現職者를 위한 高級司書課程이 設置되었습니다. 學部課程은 今年까지 3회에 걸친 卒業生이 54名이고 高級司書課程은 3회로 그치면서 62名을 輩出하였으며 1회에 그친 土曜課程은 37名을, 8週間的 司書教師課程은 1958년부터 1963年 1月까지 6회에 걸쳐 132名을 各各 養成하였습니 다. 司書教師課程은 7회로 접어 繼續하고 있으며, 幹部課程이 今年 9월에 新設되어 8名이 受講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는 梨花大에 學部課程이 設置되었는데 今年度에 1회로서 57名을 卒業시켰습니다. 1961년에는 梨花大에서도 8週間課程을 開設하였으나 1회(修了者數 未把握)밖에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을 1963년에는 中央大學校에도 學部課程이 新設된것은 자못 기꺼운 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延世대에서만 8週課程以上을 履修한 者가 288名이며 梨大輩出者와 外國에서 專攻한 者까지 합치면 約360餘名에 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에서 350餘名은 比較的 收入이 나온 大學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에 進出하거나 學校圖書館에 在職하고 있기 때문에 公共圖書館에는 좀처럼 차비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個館을 除外한 學皆의 公共圖書館은 門外者들에 依해 運營되고 있는 딱한 事情에 놓여 있습니다. 私家나 社會나 國家를 莫論하고 發展向上的 關鍵은 곧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專門職이 모두 配置되어 있다손치더라도 社會나 國家에 依한 뒷받침이 없이는 發展을 可期하기 어려울터인데 況且 나라의 뒷받침도 없는 이 荒蕪地에서 圖書館學이란 專門知識에 대한 素養없는 所謂 門外者들에게 어찌 期待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도 不幸한 것은 文化的 教育的 福祉를 바라고 있는 國民들일 것입니다. 人材의 貧困도 이만저만이 아닌 實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段階에서는 무엇보다도 人材의 確保가 第一 急한 問題라 하겠습니다. 人材確保를 위해서는 人材의 養成에 있고 養成된 人材의 導入에 있을 것입니다. 養成된 人材로 하여금 公共圖書館界로 進出投身케 하기 위해서는 公共圖書館職員의 待遇改善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現在의 制度나 處遇狀態로서는 到底히 이들의 進出을 保障하거나 바라볼수 없습니다.

近來에 와서는 學部課程의 學力도 不足하다하여 碩士課程, 博士課程을 設置하고 보다 높은 水準의 圖書館人의 力量을 要

求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圖書館의 業務가 時代와 더불어 폭이 넓어지고 量이 많아졌으며, 또한 專門的이고 學術的인 業務라는 點을 立證하는 所以라 하겠읍니다.

지금의 現實로 보아서 當場에는 어렵겠지만, 終局에 가서 幹部職은 圖書館學의 碩士課程乃至는 大學卒業以後 2年乃至 2年間의 도서관 履修를 要求할 것이며, 補佐職乃至 技術職을 위해서는 初級大學 畢業後 1年乃至 2年間 또는 最少 高校卒業以後 初級大學課程의 圖書館學의 履修를 不可避하게 할 것입니다.

大學에서 圖書館學教育을 받고 新出되는 일꾼들의 公共圖書館界 進出의 길을 如何히 터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樞要한 일입니다만 茫茫하게 우물거리는 門外의 現職者들을 如何히 訓練하고 救濟하여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文教部和 圖協當局은 大學이나 그밖의 必要한 機構로 하여금 現職者중에서 高校 卒業以上の 者를 各其 學力에 따라 應急的인 措置로 最短 8週課程(大卒以上者), 1年課程, 2年課程等の 長期課程을 두어 養成해야 할 것입니다. 夏冬季放學講座를 두어 3年乃至 4年동안에 專門知識을 얻을 수 있는 機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圖協이 主管하고 있는 從來의 60時間程度의 短期實務講習制度는 萬若 이것을 살린다면 좀더 規模와 制度를 바꾸어 年2回 定期講座로서 一定한 年間畢講한 뒤에는 一定한 資格을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地方講習會制度도 좀 더 틀어 바뀌서 文教部, 中央圖協, 道當局, 地區圖協 등이 有機的인 體系와 協調밑에 道單位로 開催하여 亦是 一定한 資質獲得에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公共圖書館의 司書職處遇에 있어서는 大都會市에 있어서는 館長은 적어도 該市의 2級公務員 및 中高等學校長과 同位の 待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밖의 市郡의 館長은 3級公務員 및 國民學校長과 同等한 待遇를 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司書 및 準司書의 待遇에 있어서는 應分에 따라 初中高校敎職者와 同等한 位置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公共圖書館司書職의 報酬制度는 別任職制度에 依한 號俸에 따라 優待할 수 있는 世上이 되어야만 비로소 地域文化의 金子塔을 建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豫算問題

議題에는 「豫算」이라 標榜되어 있으나 다만 「財政」이라는 말로 바꿔 考察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습니다.

圖書館의 三大要素라고 일컫는 建物, 資料, 人員 등의 諸與件이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짜여져 있다손 치더라도 奉仕와 運營을 위한 財政이 不實하다면 모처럼 마음먹었던 좋은 目標나 理想도 한낱 水泡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圖書館財政은 圖書館에 있어서 第四의 要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身體에 견준다면 財政은 血液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財政의 確保와 그 流通의 圓滑如否는 곧 圖書館奉仕의 成敗를 左右한다고 할 수 있으며, 圖書館事業의 振否如何는 國民文化의 向上과 國力伸張의 素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이제까지의 財政事情은 너무나 寒心할 程度로 窘塞한

至境에 있기때문에 구태어 밝힌다는 것은 避하겠읍니다.

地方當局은 公共圖書館費의 支出이 將來할 文化의 創造, 未來의 國富民強을 위한 現在의 投資로 생각하기를 躊躇하고 있습니다. 忠實하고 誠意있는 現在없이 未來의 發展이란 期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學皆의 當局者나 地方當局者는 公共圖書館을 消費性機關으로 看做하여 밀어 제쳐 놓는 傾向이 濃厚합니다. 例年마다 地方當局의 豫算編成時에는 依例히 中央當局으로부터 豫算編成指針이라는 것이 示達됩니다. 그에 依하면 住民의 福祉事業費以外的 消耗性事業費支出은 抑制하라는 것이 번번히 불수 있는 例입니다. 圖書館事業은 福祉事業으로 認定하면서도 알송달송하게 消費機關이란 名目 밑에 恣意에 가까운 任意的 豫算이 計上되는 것이 通例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基準이나 保障도 없는 豫算으로 一年間의 역지運營과 苦生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圖書館法이나 그에 따르는 圖書館基準이 없는 서러움이란 이런 때에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國民所得은 대단히 낮고 따라서 國民의 負擔力이 弱한 탓으로 地方自治團體의 財政事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現代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많은 福祉를 베풀어야할 使命을 띠고 있기 때문에 設使 地方當局의 財政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여러 福祉施設을 마련해야할 苦衷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擧皆의 나라들이 앞에서 말한바의 여러가지 隘路를 풀기 위해서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當局에 대한 國庫補助金制度를 두거나 公共圖

圖書館財政의 恒久的 財源을 위한 圖書館稅 制度를 일찍부터 마련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100餘年前인 1850년에 英國이 圖書館法을 制定하고 이어 圖書館稅를 徵收하고 있는 것이나, 美國이 1848년에 보스톤市와 1849년에 뉴·햄프셔州에서 各各 圖書館法을 制定하고 圖書館稅制度가 마련됨을 비롯하여 各州마다 이것이 普及된 例가 그것입니다.

특히 1942년에 A. L. A. 가 設定한 美國의 公共圖書館基準은 1944년에 奉仕對象 人口 25,000 以上の 1館單位의 1人當 經費를 最低水準의 奉仕에 1,50弗, 合理的이고 良好한 奉仕에는 2.25弗, 優秀한 奉仕에는 3弗, 또한 1單位當 最低經費를 37, 500弗로 하는 改正基準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A. L. A. 는 1956년에 第3次 改正基準에서 圖書館의 連帶運動強化를 目標로 圖書館體系網의 形成을 指向키 위한 大圖書館單位化를 強調하게 되었습니다. 美國의 全人口를 대상으로 하는 圖書館體系網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年間經常費를 地方當局에서 60%, 州政府에서 25%, 中央政府에서 15%를 各各 分擔토록 되어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例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公共圖書館을 設置, 維持키 위한 經常財源을 摸索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方途를 考慮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先進國의 例를 따라 圖書館稅制度를 採用하되 現行 地方稅法을 改正하여 消防稅와 같은 地方團體의 目的稅로서 圖書館稅를 規定할 수 있습니다.
- ② 地方稅法을 改正하여 目的稅로서 社會教育稅制度를 새로 規定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圖書館을 비롯한 博物館, 美術館等과 같은 社會教育文化施設에 適切히 分用할 수 있습니다.
- ③ 地方稅法에 目的稅로서 規定되었던 5.16前的 教育稅制度를 復活하되 그 用途를 初等教育의 經費로만 充當하도록 規制하지 말고 圖書館經費로도 쓸수 있도록 規定할 수 있습니다.
- ④ 圖書館을 設置하거나 經營하는 地方團體에 대하여 政府補助, 道費補助, 地方團體負擔等의 比例를 定하여 地方團體에 補助함으로써 도서관을 育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圖書館의 財政이 制度的으로 保障될 때 비로소 圖書館事業은 本軌道에 오를 것이며 지난날에 그토록 恣意配定으로 말미아마 圖書館이 賤待되고 縮減되던 惡弊는 一消滅 것입니다. 그리고 從來에 任意事業視되던 圖書館事業은 비로소 義務的인 事業으로 깊이 認識될 것입니다.

×                    ×                    ×

그러면 저의 議題發表는 以上으로 끝맺 겠습니다.